12명의 성난 사람들

□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

I. 배심제도

배심제는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제도 로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판 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제도가 가장 발달한 곳은 미국이며, 스페인과 러시아도 배심재판을 도입한 바 있다.

Ⅱ. 참심제도

참심제는 직업법관과 일반인인 참심원이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이다. 참심원은 배심제의 배심원과는 달리 일반인 중에 선정된참심원이 일정기간 동안 직업법관과 함께 합의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하며, 이때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한다.

참심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데 스웨덴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I. 의의

2007년 4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배심제와 유럽의 참심제를 혼합한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시대를 열었고,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의 배심제도의 형식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직접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평의의 결과와양형 의견을 전달하지만, 배심원단의 의견은 참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의 내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결과를 선고할 경우,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고 피고인에게 설명해

목차

- □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
-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NOTE



Ⅱ. 대상사건의 접수와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교통방해치사,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도살인·치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우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나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Ⅲ. 배심워의 자격

- 1. 법원은 사건에 필요한 배심원 후보자 수를 정한 후, 배심원 후보 예정 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 2.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동봉된 질문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바쁘다거나 하기 싫다는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할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만 20세 이상인 자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i) 피성년후 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 거나, (ii)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70세 이상,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 자로 출석한 사람), (iii)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에서 배제된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0조 참고]
- 4.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배심원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 5. 배심원에 선정되면 교통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하루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후보자는 6만 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Ⅳ. 배심원의 기피

1. 재판장은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배심 원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검사나 변호사도 배심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해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다.

V. 배심원의 수

-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9명, 그 외의 사건은 7명으로 한다.
- 2. 공판준비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VI. 배심평의

- 1.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뒤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 그 밖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한다.
- 2. 설명 후 법관의 관여 없이 배심원들 간에 유, 무죄에 대한 평의를 진행한다.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방법은 만장일치로 하며(제1차 평결),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시 평결할 수 있는데(제2차 평결), 이 경우유죄의 평결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과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 3.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들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한 후 양형의견서를 제출한다.

Ⅷ. 판결선고

- 1.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며, 배심원이 내놓은 양형의견은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여부 및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한다.
- 2.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 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알리고 판결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야 한다.

Ⅷ. 배심원의 의무

1.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돈이나 선물을 받은 배심원은 금품수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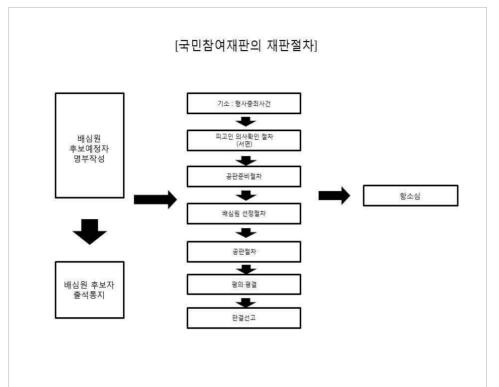
□ 무이유부기피신청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NOTE



- 2.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한 때에는 비밀누설죄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배심원에게 청탁이나 협박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